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9. 4.(목)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원제 부위원장 (국외출장으로 불참)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원제 부위원장님께서도 오늘 국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은 총 2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3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9차 회의의 회의록, 제40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40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 1일 열린 전차 회의에서 불미스럽게도 퇴장한 위원으로서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고, 향후에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삼석 위원께서도 나중에 퇴장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먼저 퇴장을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회의는 인사안을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 회의였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퇴장한 것입니다. 저는 이인호 후보에 대한 제안을 처음 들었던 목요일 오후 간담회에서 이의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여는데는 이의제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회의를 열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그것으로 의결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수가 추천안을 의결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말 강행처리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합의제 운영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인사안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절차도 방통위 사무처에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관행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옳지 못한 관행은 따를 수 없습니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의결해 놓고 나중에 검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 왔다?’ 여기는 추천기관으로서 의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때 청와대에서 또 따로 검증할 수 있지요. 우리 상임위원들도 그런 절차를 국회에서 밟았고 나중에

추천된 뒤에 또 임명장을 받기 전에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인호 후보는 추천하기 위한 검증, 기본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의안이 상정된 것이고, 상정된 그 자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거둬 드는 것은 논의만 하고 토론만 하고 그리고 이제야 많은 국민들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가 알았으니까 바깥의 시민사회 검증도 필수이고 여론조사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일주일만 연기하자고 간청을 더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지켜져야 하는 것은 그날 인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 후보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활동경력을 짚어가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검증하는 방식은 상임위원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들의 지식, 정보, 양식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을 가지고 또 지적하면서 아주 과하다라든가 명예훼손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제동, 제지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는 인사안을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리다, 기본요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장할 수밖에 없었고 퇴장한 뒤에 최소한 이것을 다음 회의에 의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제 예상은 빗나갔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니다. 또 하나 이기주 위원께서 그때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공개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적사항이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과 함께 “왜 자꾸 바깥 여론, 시민사회, 언론계, 학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 당국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할 때 국민 여론의 바탕에 서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공공정책론을 강의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끼리만 할 수 없습니다. 제 학문적 소신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공직일수록 그 관련 시민단체와 국민 여론층의 검증을 거치고 여론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시고 이번 인사안에서도 결정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지적이 나오면 저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어떤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들이 이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로 70대, 80대 되는 어르신들이 한탄하면서 전화도 해 오고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부결시키려고 한다, 반대를 더 강화하려고 한다? 그것은 차후에 볼 일이고, 어쨌거나 국민여론과 동떨어져서 방통위만의 추천 의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 소신을 거둬 밝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깥 여론을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저의 퇴장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겸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도 거둬 말씀하셨던 방통위의 합의제 운영원칙을 지키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꼭 9월 28일까지만 추천하면 되는 사안을 그날 의결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기주 위원과 저와 토론을 하든지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합의제 운영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합의제 원칙에 맞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합의제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위원님들

의 의견이 일치될 경우에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맞는, 다 같이 공감되는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적었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인호 이사 추천 건에 관해서 아주 빠르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방송법에 의하면 보궐이사는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30일 이내라는 것은 가능하면 더 신속하게 임명할 수 있을 때는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지금 보궐이사는 잔여임기만 담당을 해야 하는데 그 잔여임기는 이미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KBS 이사회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신속한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와 같이 진행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 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지금 부위원장의 해외 출장과 그다음에 추석 연휴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인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외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의 의견이라는 것이 그 외부가 또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외부의 견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모든 외부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하는지는 위원님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는 어디어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 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자 또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범위에 대한 의견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부분이지, 그것을 논의해서 하나의 방법을 정해 놓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차 회의에서 제가 퇴장할 때에는 토론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검증 문제는 또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의결을 위한 표결이라고 할까, 의결로 들어가겠다, 선언을 하고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토론도 종결하기 전에 그냥 강행처리라고 할까, 강행이라는 말은 좀 더 세다고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 검증, 기본도 안 됐다는 문제와 함께 회의 운영에서 위원들의 토론절차가 끝나기 전에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그것이 합의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회의 의사 운영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위원장의 국외출장 문제와 시간제약 문제 가지고 그런 중요한 문제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임위원 둘이서 '계속 일주일 뒤로 합시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토론도 종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은 반대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의 위원이 오늘 추천안을 그대로 하기를 바라니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두 번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는 토론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표결했다는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 드리면 앞으로는 토론 중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퇴장을 하면 그 안건은 계속 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진행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검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사 추천에 관해서 과거에 보궐이사를 몇 번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다 일단 추천이 되면서 범죄경력 조회나 본인확인서 등 이런 기계적인 절차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절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무조건 관례라고 해서 따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상 회의에서 추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 분에 대한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지를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더 이상 위원장님께는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듭 합의제 운영원칙을 지켜 주시고, 저는 전례나 관행은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제1기 최시중 위원장, 제2기 이경재 위원장 때도 일부 위원이 크게 반대하거나 비토권을 행사하면 시간 여유를 두고 호흡을 늦추고 그다음에 또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처 간부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에게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토론과 의견수렴과 합의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위원장님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기주 위원께 제가 토론을 요청한 것처럼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제 이름을 지칭하면서 비판, 비난, 공격하지 않는 한 다른 위원님의 이름을 지칭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토론할 때에도 제 자신의 소견을 이야기할 뿐이지, 다른 위원을 지칭해서 그것은 법령적 근거가 없다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거나 아주 과하다거나 그렇게 검증하는 방법은 틀렸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다 뒤져봐도, 검증해 봐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국회에서도 여야 싸울 때에도 동료위원의 이름을 지칭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야당 추천 위원 한 분이 안 오셔서 저 혼자 감당할 때에도 그때부터도 정말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때부터 제 이름을 지칭해 가면서 '그것은 부당하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 하는 일종의 탄압, 억압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1일 인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저는 정말 인사 대상자,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그 경력, 활동을 짚어가는 그런 마당에 '명예훼손이다' 하는 것과 '바깥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저의 검증방식입니다. 저는 일반 직업관료, 제가 결코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무처 실무 당국자와는 다른 정무직 공직자입니다. '정무직'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그만큼 국민의 여론을 살피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공공정책을 강의하는 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관료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무직 고위공직자는 그 관련 시민단체와 국민여론을 살피 가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 개인적, 학문적 소신에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의에서 그것으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기주 위원님의 답변이라고 할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부분은 또 다르게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회의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범위가 넓어서 포괄적인데 일단 물으셨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공개롭게도 제가 드릴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주장이 계속 위원님들 간에 오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나중에는 다른 위원님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제가 방해하거나 제동을 거는 뜻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어쨌든 김 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그런 것을 받으셨거나 느끼셨다면 앞으로 회의 과정에서 제가 의견을 피력하거나 발언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끝으로 굳이 제가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논전을 벌이는 것처럼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비공개 회의지만 정식 회의에서 나온 일이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야당 위원 두 사람이 퇴장했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어떤 분들은 책망도 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제대로 일을 잘못된 것처럼, 도리를 잘못된 것처럼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독립운동 단체들, 그 원로 어른들이 나서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날 몸을 던져서라도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매우 자괴감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 드리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 행정부처와 달리 회의체입니다. 의안 상정에서부터 토론, 의견수렴, 결정에 이르기까지 합의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말씀 드리는데 다수결, 이것이 민주정치 원리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국회의 선진화법도 최소한의 성찰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단순 다수결제로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다수결제로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중우정치입니다. 데모크라시(democracy)의 매우 부정적인 측면만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끝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는 아직 제 입장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합의제 운영원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제 위원회에서 다수결은 최종적인 의사결정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설득이 거기에는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대, 특히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KBS 이사 추천 과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앞으로도 힘의 논리로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수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난 회의에서 했던 제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절차상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합의제 운영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길영 KBS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26일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된 날짜는 28일입니다. 그리고 사표가 수리됐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되기 전에 1일 회의 일정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월요일에 회의를 강행해서 이인호 교수를 KBS 후임 이사로 추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일 지난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대통령께서는 이인호 교수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추천부터 임명까지 검증도 없이 이렇게 진행된 사례가 제가 아는 선례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인사인지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서 이번 이인호 KBS 이사 추천 임명절차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 정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밖에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만 저는 방송통신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절차들이 단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의 마무리 발언에 이인호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리더의 덕목은 포용력이다. 조그마한 눈으로 보는데 이익이 아니라 가족의 이익, 나라의 이익, 인류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추천에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분의 발언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지식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언행일치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과거에 이인호 교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인사를 놓고 철저히 끼리끼리 해 먹는 코드인사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인사독재”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도 코드에 맞기만 하면 아무 자리라도 넘보고 또 실제로 차지한다” 이런 비난도 했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 논설위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이인호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그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 문제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MBC 상암 신사옥 개막 기념식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달라” 이것이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그리고 검증도 하지 않고 추천과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안전들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미 추천이 된 것을 가지고 자꾸 이사 추천된 분의 말씀이나 성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 동아일보의 어느 분이 쓰신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박스로 칼럼이 하나 기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기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길영 이사장님이 사표를 제출하신 이후에 아까도 누차 말씀 드렸듯이 보궐이사로서의 기간은 지금 1년이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장으로 계시던 분이 이사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의 소집을 주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궐이사를 추천하고 다시 말하면 일반 이사가 꺾어진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천이 되어서 절차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열려서 이사장을 서로 호선에 의해서 선임해 놓아야지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후보를 빨리 추천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절차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한 절차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합의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능하면 합의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수결은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도 간단히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지난번에 KBS 보궐이사 선임절차가 방송법이나 방통위 운영규칙에 따른 두 프로세스 (Due Process), 즉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토론 과정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

째는 검증 문제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KBS 이사 추천에 있어서 저희가 표현을 검증이라고 할지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사상, 이념, 철학, 언행 이런 것들은 토론할 수 있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서 합의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결에 관해서 저도 굳이 법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위원회제라고 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섯 분의 위원들이 다 합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 간단히 해 주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검증을 법적 결격사유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최근 언론보도를 두 군데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인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입니다. 선거캠프는 끝났습니다만 자문위원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자문, 고문, 무슨 위원을 한 분이 정치적 독립성과 이념적·사회적 중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관철은가 하는 것은 법적 근거로 미루어도 검증해 봐야 할 일입니다. 사후에 빠져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 상태에서 추천 의결했고, 그 어간에 어떤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이라는 것을 짚었습니다. 이런 것은 추천기관인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은, 하자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기주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일 저희 직원들께서 이인호 교수를 방문해서 검증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 동의서에는 경찰청이나 국세청, 즉 일반적인 후보자 검증에 관련된 동의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각 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서 정한 자격기준만 볼 것 같다면 우리 위원회의 사무국에서 필

요 없는 일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록으로 남겨 놓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인데, 지금 범죄경력 조회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저희가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인사를 할 때 어느 기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검증이 아니고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 이번에 또 새로 추가된 결격사유까지 포함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무엇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 보면 범죄경력이 어떻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을 따로 저희가 그런 검증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KBS 이사회는 여차피 여권에서 추천받은 이사와 야권에서 추천받은 이사 분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의 각각의 입장들이 그렇게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공공성 이것 하나로 해서 다 균형적이고 독립적인, 중립적인 그런 분들로만 이루어지는 이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엄연히 서로 차이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만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재 대통령의 자문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일로 해서 그것이 이사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챙겨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건이 아니고 고 위원님이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 참고로 제 입장을 말씀 드리면,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밝히든 어떤 표현을 쓰든 제 이름과 표현과 내용을 바로 인용해서 반박을 해도 저는 얼마든지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수용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결 안전하기 전에 서면 안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서면 회의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면 의결하면서 남겼던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9월 3일 서면회의로 처리됐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변경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주)씨엠비한강케이블티브이 등 10개 사업자 22개 SO에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제가 찬성했습니다. 살펴보니 이 안전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저희가 기술기준고시에 관한 부분을 합의하였던 상태이고, 그 기술기준고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내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찬반 의견을 낸다는 것이 크게 결과를 달리할 수 없어서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케이블TV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 증진이 되도록 할 것” 이러한 의견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회의 때 말씀 드렸습시다만 케이블TV 관련 사전동의제가 현재 100여 건 가까이 처리가 됐습니다. 대체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대로 저희들이 많이 동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 미래창조과학부의 케이블TV 정책의 목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케이블TV의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무래도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용자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케이블TV와 관련된 사전동의가 들어올 때는 위원회의 정책적 목표, 입장을 명확히 해서 사전동의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사전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늘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강릉·삼척MBC 법인합병 변경 허가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14-41-11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강릉·삼척MBC 법인합병 변경 허가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강릉·삼척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2014년 7월에 접수된 강릉문화방송(주)와 삼척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 허가신청에 따른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현황을 말씀 드리면 강릉문화방송(주)과 삼척문화방송(주)이 양사 법인 합병을 변경허가해 줄 것을 신청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강릉문화방송(주)이 삼척문화방송(주)을 흡수합병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합병 후 회사명은 ‘(주)엠비씨강원영동’으로 변

경을 하고, 방송구역과 연주소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합병 전·후 법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 심사 계획입니다.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합병법인의 지역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합병지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 청취한 결과를 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난 '11년도에 실시한 창원·진주MBC간 법인합병 변경허가의 심사절차를 동일하게 적용코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시청자, 관계자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견도 수렴코자 합니다. 심사항목별 배점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으로 하고, 방송 및 경영 등 전문가 8인 이렇게 해서 총 9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여부 결정 기준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를 의결코자 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그 계획에 따라 9월 중에 시청자 의견 청취 및 미래부로부터 기술심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10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강릉·삼척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통합이유는 지역간 근접성 때문입니까, 경영상의 이유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우선 가장 큰 것은 경영상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척문화방송(주)은 적자를 시현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통합성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항상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도 어렵고, 심사위원 구성에서 역시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반영해야 할 텐데 각 분야의 관련학과 교수, 전문가들을 했는데 시청자는 물론 그 지역인사들이겠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학교수라도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라고 할까, 그 지역성을 반영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쳐 놓으면 항상 통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지역성

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강릉과 삼척은 거리가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강릉 사람, 삼척 사람이 자신들의 지역문화를 매우 존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도 삼척지역 시청자 의견을 들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해당 지역의 시청자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청자 의견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청취합니까? 구체적인 과거의 예에 비춘 방법이 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관보와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합병 변경허가를 신청한 양사의 방송을 통해 고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사안은 노사 합의로 진행되고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노사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노사 합의원칙이 가급적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서 지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통합된 다음에 꼭 나오는 것이 방송의 편성이나 보도의 분량 가지고 지역간 차별 논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통합 이후에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변경허가를 할 때 허가조건으로도 부과할 수 있지요? 편성에 저희가 간섭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이나 틀을 저희가 변경허가에 부과할 수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기본적으로 변경허가신청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실 때 심사항목에도 있지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계획의 적정성 여부에서 일단 점수를 주시면서 만약에 부족하거나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 있다면 조건으로도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미래부의 기술심사 내용과 여기 심사항목 중에 기술적 능력 심사하는 것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규허가나 재허가 때 심사항목과 똑같지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똑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때 기술적 능력 부분과 합병할 때 기술적 능력 부분을 심사하는 것과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법인합병에 있어서 저희가 합병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부의 기술심사와 저희 부분에 있어서 최초 허가심사와 다른 부분은 별로 없겠지만 일단 저희가 고려할 부분은 미래부와 통합해서 운영할 때 연주소를 2개 운영하는 부분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할 때 실제 양쪽을 운영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방송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 미래부는 망 구축에 있어서 안전성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합병이라는 것이 결국 경영상의 효율성, 효율적인 경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은 상식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인 경우에 방송 네트워크상의 효율성을 피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2개의 방송사로 나누어진 상태와 운영이 똑같다면 그 부분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주파수의 효율적인 운영, 활용 이런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심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미래부 쪽에서 의견을 받고 그런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도 반영해서 기술적인 능력이나 전반적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부분에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그냥 실체와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상호 법인명을 종전에는 '무엇무엇 문화방송(주)'

다들 이렇게 지역명을 따서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주)엠비씨강원영동으로 하는데, 특별히 전체적으로 주식회사명을 다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합병법인들은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1차적으로 합병한 지역도 창원과 진주는 '엠비씨경남'으로 출범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사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석상에서 심사위원장도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들 한 번씩 하셨던 것 같고, 고삼석 위원님만 아직 심사위원장을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것은 고삼석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역방송발전위원이기도 하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딱 맞는 것 같아서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동의하겠습니다.(장내 웃음)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4-41-11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

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선정 및 인정 분야입니다. 공익채널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사업자 중에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및 공익채널 전문편성세부영역 적합여부를 중점 심사하여 적정 사업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채널 방송사업자는 신청사업자 중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자를 인정코자 합니다. 선정 및 인정 절차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상정 논의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두 번째로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청사업자의 제출서류 등을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여부, 조건부과 등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공익채널은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학계, 방송실무, 경영, 회계, 소비자·시청자단체로 7인으로 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은 공익채널 7인에 장애인 분야 1인을 추가하여 8인으로 운영·구성코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간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토록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심사기준입니다. 공익채널의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심사사항을 구성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심사배점을 적용코자 합니다. 공익채널의 심사사항별 배점 등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에는 공익채널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공적 책임의식과 사업수행능력 사항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코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심사사항별 배점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선정 및 인정 기준입니다. 공익채널의 경우에는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해서 3개 이내로 선정코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에는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그리고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를 인정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신청요령을 공지하고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코자 합니다.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익채널 및 공공채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

제점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개선방안이 적용 안 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다음에 공공채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미래부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성격은 비슷한데 그것을 지정하는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연구반을 통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공공채널의 주관부서가 미래부, 공익채널은 방통위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성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공익채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 자격기준이 여타의 PP와 차별화되어 있지는 않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공공채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공익채널이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이것을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사업자의 적격성들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애초에 보면 공익채널이든 아니면 일반PP든 이것이 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은 크게 차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법을 고쳐야 할지, 아니면 제도로서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심사기준은 작년 심사기준 및 배점과 차이가 없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동일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 되었습니다.

다. 통신사 영업점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4-41-119~14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통신사 영업점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통신사 영업점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사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배경은 통신사 영업점(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의 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시 취급되는 개인정보 관리의 취약분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수집·보관·이용상 위법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금년 초에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개인정보 유통피의자를 검거해서 불법 개인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4사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이 일부 확인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사 대상은 금년 1월분 휴대폰 개통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영업점 총 3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경과는 3월 14일~3월 28일까지 현장조사가 있었고, 6월 12일~6월 30일까지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 및 관련사업자 의견조회, 그다음에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위반사항 및 처분규정입니다. 통신사 영업점 33개사 중 27개사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였고, 처분은 조항별로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온넷 등 25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업무용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으로 동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1,0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주)가나안통신 등 21개 사업자가 이동전화 개통과정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수료 정산 또는 민원 해결용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으로 동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역시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가나안통신 등 21개 사업자가 이용목적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으로 동법 제76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역시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주)온넷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주)서원은 현장조사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및 동법 제64조제3항(자료의 제출 등) 위반으로 동법 제76조제2항제4호, 제76조제3항제24호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과 제27조의2제1항(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64조제3항(자료의 제출 등)을 위반한 사업자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는 한데, 동법 제23조의2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1개 이상 위반한 사업자 24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과를 유예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래 과태료 부과 유예사유를 보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영업점들은 휴대폰 개통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사로 송부하면서 즉시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를 보관하면서 수수료 정산 또는 민원 해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망법상 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또한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고객의 접점의 영업점 특성상 개통 후에도 민원해결 또는 수수료 정산용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제23조의2,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이용금지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에 대해서는 금번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제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를 위반한 1개 사업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25개 사업자 중 24개 사업자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만 파산하여 연락이 두절된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보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자료를 제출 등)을 위반한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별 처분내역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이 되면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통사 영업망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됐든 법규위반 여부조사가 됐든 그런 것이 이번이 처음

은 아니지 않나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를 들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통사가 했다고 했을 때 지난번 KT처럼 과거에 그랬을 때 이통사뿐만이 아니고 영업망 쪽에도 가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태료 부과 유예사유는 저도 이해하는데 ‘다만’ 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번호 이용이 범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 유예는 좋은데, 그러면 이 2가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지금 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번호와 관련된 수집과 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민번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입 시나 기기변경 시에 받더라도 이통사에 바로 송부하고 나서는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할 것이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제도개선과 법규 위반여부를 조사, 제재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사대상도 보면 영업점 중에서 상위에 있는 영업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규모가 더 영세한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해 보지 않았지만 법규 위반의 개연성은 더 크다고 보고 더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취약한 영업점들을 대상으로 법규의 내용도 잘 설명하고 교육하고 계도하고, 아마 규모가 작은 영업점인 경우에는 인력이나 기술능력이 달려서라도 이런 주민번호 파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모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취약한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처분은 지금 사무처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시되 여기에서 딱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런 취약한 영업점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계도, 기술적·법적 지원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더 후속조치로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에 단통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영업점들이 이통사에 사전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할 조건들을 포함해서 동의 받을 때 잘 지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서원'이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면 저희가 전혀 아무 것도 조사를 못 했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전혀 못 했습니다. 아예 거부를 했기 때문에 DB 관련된 부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쭙보는 이유는 물론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이 최상한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최상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낮게 부과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현장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조사를 했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거부한 사람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거부한 것으로 인해 300만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순순히 조사에 협조를 한 데는 적발이 되어서 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조사를 할 때 거부하는 일이 자주 생길 우려도 있어서 지금 과태료 기준이 300만원이 최고라고 했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과태료 기준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발된 것의 최고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거부하면 내가 더 손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한 1,500만원이나 2,000만원쯤 부과한다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일단 조사에 응하고 내가 내야 할 것을

내야겠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이것이 최고액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저도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 유예사유를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저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이나 또는 주민등록번호 파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가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을 부과하고, 더군다나 암호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부과하는데 과연 형평이 맞는 것이냐? 개인정보 취급방법 공개는 물론 이것도 아마 경미한 것이라고 해서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미한 것은 부과하고 그다음에 더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한 위반을 하긴 했지만 과거의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어찌고 해서 거기는 부과를 유예한다면 조금 형평에 안 맞는다는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논리로 부과를 유예하지만 그 부과를 받는 영업점들 입장에서는 '혹시 저것을 유예해 주면서 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이것이 훨씬 더 경미한 것인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야!'라는 그런 불평·불만이 혹시 있을 소지는 없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금번 대리점에 대한 첫 조사를 나갔던 부분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했지만 주민등록번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이어졌던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망법상 크게 유예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리점들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번에 한 번 경고성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유예하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파기에 위반되지 않은 영업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위반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데 위원장님, 처음에 벌을 줄 때 위반의 조항이 5개면 5개에 대한 과태료를 합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한 사업자가 33개인데 다는 아니지만 20 몇 개 회사는 거의 여러 개가 중복되어서 위반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후에 정산용으로 써야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2가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해 주면 처분 받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3개, 4개 걸릴 것들을 다 2개씩은 유예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불만을 가질 만한 회사는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전체 사업자 중에 5개 사업자만 이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다 이 부분 해당되는 사업자들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조사를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 수준을 올리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전에 조사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조사를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영업점들은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조치를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점검을 또 한 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이야기했지만 형평성 문제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불응한 것은 300만원이 최고 한도라고 해서 저희가 더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거부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조사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가정하고 과태료를 매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라고 할까, 행정권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이고….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단계적으로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희들이 재조사를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부하면 가중처벌로 현재 있는 과태료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과태료 관련된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바로 재조사를 나가서 또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거기에 맞게 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정처분(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개선할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셨고, 기본적인 (안) 일부는 유예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부과하는데 이 부과 자체는 고시에 따라 다 기계적으로 해당사항을 찾아서 부과되는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4-41-14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 2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사업정지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처분기관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알선분과위원회’의 중립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5월 15일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린바 있고, 그다음에 5월 21일~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4일 규개위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직접 제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1일당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정지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완화된 대체수단으로 과징금액이 적은 사건 등에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알선분과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알선분과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실질적인 통신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립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이 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당연히 개정할 거네요.

○ **이기주 상임위원**

-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미래부는 당연히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동의 하겠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통신사업자들은 동의하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신설한 조항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이행강제금)제2항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다음에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어떤 특별한 취지가 있는 것입니까?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예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르면 ‘사업정지’나 ‘같은 과징금’은 ‘형벌’ 부과토록 하는 다른 별도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조치할 수 있는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실효적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30일로 제한한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30일이 지났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사업정지 쪽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데 특별한 사유로 혹시 예정한 것이 있습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아닌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문구를 더 넣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일괄정비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일괄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일괄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사유는 범정부차원의 사업자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재검토기한 연장 등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일괄정비 추진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고시는 요금고지서의 구성 및 고지사항 등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영업자유 보장 및 요금제별 탄력적인 정보제공 등을 통한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의 폐지입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의무 폐지에 따라 전자적 표시방법 형식 및 적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고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홈페이지, 점포·사무소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실제 이용활성화가 되지 않는 전자적 표시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세 번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 재검토기한 연장 건입니다.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3건에 대해 폐지·개정 등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검토기한 연장 고시 관련 법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9월~10월까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받고, 11월에 위원회 의결을 한 후 관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검토기한 연장 내용을 보니까 방통위 규정과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이것이 법률에 관련되는 규정은 그냥 계속 가는데 고시 내용만 재검토한다는 것입니까, 재검토기한을 다시 연장한다는 뜻입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고시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체가 계속 유효한 상황에서..., 하지만 고시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검토할 때 항상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거의 기본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존폐에 대해서 판단한 후에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재검토기한 연장 대상 3가지 고시 중에 <1>번은 잘 모르겠는데 <2>번, <3>번은 모법의 법률의 규정이 계속 유효한 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3가지 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기한을 다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법률 규정에 대한 재검토이야기가 아니고 고시에 대한 재검토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규제개혁 심사를 할 당시에 법에 위임을 받은 고시니까 고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고시의 내용에 대해서 고시 자체의 존부를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시의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입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같이 포함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둘 다 같이, 존부 및 내용까지?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법이 있는 한 존부는 저희가 재검토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용을 재검토하라면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완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법에 근거가 있고 어찌 보면 고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저희 의무인데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재검토기한 연장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자율적으로 해서 다시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고시 폐지와 관련해서 전기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삭제하는 것은 개정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지난 7월에 위원회에 보고 드렸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공청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전자적 표시방법에 대해 일부 폐널께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한 가지 공개방법 중에 속하는데 조금이라도 존재에 이의가 있다면 존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폐지해도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다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반대하는 의견은 한 분 정도 나왔습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첫 번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폐지인데 여기에 보면 요금고지서의 구성에 대해서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도 이통사들의 요금고지서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폐지 이유를 자율적인 이용자보호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자칫하면 사업자들의 자율성은 증대하는데 이용자보호환경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시를 폐지하면서 예를 들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사업자와 의견 교환한 것이 있습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들은 내용보다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불필요한 고시를 폐지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용자보호 측면은 금지행위 규정이 매우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용자 쪽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업자 쪽을 통해 이 고시를 폐지한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부분들은 행정 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최종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저희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행위라든지 요금고지서의 구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미 고지서를 다 바꿔서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고시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고지서를 다시 바꿔서 이용자가 잘 모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폐지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는 「방송법 시행령」·「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13년 8월 13일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KBS, EBS 결산서 제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8일 「방송법」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지역 민방에서 자체편성비율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6월 24일 법제처에서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 위탁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공동체라디오방송 의무 운영 시간 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에 대한 자료 요구 규정이 방통위 규제 감축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KBS, EBS 결산 관련 자료제출 범위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 첨부서류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서 제출 시 합계잔액시산표,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 위탁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하는 「방송법」 제90조의2 개정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지역 민방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비율 규제 완화입니다. 지역민방사업자들은 월드컵 등 국민관심경기가 있는 기간에는 월간 단위로 되어 있는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국내제작 편성비율,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반기나 연간 단위로 규정

하는 데 비해 지역 민방의 편성비율은 월간 단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역 민방의 편성비율이 나와 있는데 KNN·대구·광주·대전은 SBS의 방송프로그램을 69%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체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이 31% 이상입니다. 그다음 울산·전주·청주는 SBS 프로그램이 71% 이내로 되어 있어서 자체편성비율이 29%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과 제주는 SBS 프로그램이 77% 이내로 되어 있어서 자체편성비율이 23%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월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니다. 이런 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 바꿔 말하면 자체편성비율을 월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방통위 규제 감축 과제입니다. 감축 과제로서 첫 번째 공동체라디오 방송 의무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이 안정화되어 평균 15시간 이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방송광고판매대행사협회에 대한 자료 요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해 협회에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협회 설립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에서 이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등 기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은 방송법 시행령에는 규정하지 않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그 위탁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 조항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방송내용 기록·보존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사의 편성비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송내용의 기록·보존하는 업무가 필요하고, 이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를 방통위로 환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되어 있는 방송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환원하기 위해 위탁 관련된 규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방송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방통위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관한 사무를 의미하는 '계리'라는 표현을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잘못 표기된 단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당초 방송법 제69조제8항, 제9항이었던 규정이 앞 조항 신설로 제9항, 제10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심의 과태료 규정에서도 법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를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및

시행의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KBS, EBS의 자료제출 범위를 명료화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던 것과 자료의 범위가 줄어들니까, 넓어집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KBS와 EBS가 그냥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자기들이 그냥 내는 대로….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이번에 여기에 넣은 사항은 기존에 제출하던 서류 중에서 법의 취지대로 결산의 내용을 명확함에 필요한 서류에 한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근거 규정을 만드는데 MBC 방문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방송법 제98조 자료제출 조항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왜냐하면 MBC가 상암동으로 이주하면서 본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엄청난 재정 투자가 들어갔고 이주했는데 아마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것을 따질 것입니다. 신사옥을 건설할 때 들어간 예산 규모와 그것이 MBC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리가 분석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KBS, EBS에 대해서도 물론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일 텐데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줄여준 것인지, 확대한 것인지 그 의미를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규정에 넣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내용 기록·보관을 위해서 하는 모니터링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모니터링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비율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업무를 확인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되어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현재 위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이나 인력구조로 봐서 불가능한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불가능할 것은 없는데 문제는 방송법 제83조에서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업무를 이렇게 규정하면서 자료제출처를 '매체별로 해당 부처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와 종편PP와 보도PP는 방통위에 제출하는데 나머지 SO나 위성방송, 일반PP사업자들은 미래부 소관 부처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쪽에서 가져오려면 방송법 제83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업무가 꼭 편성비율을 위반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책 목적에도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부가 저희에게 제출하라고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저희 쪽으로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런 정책 기본자료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모니터링 자료를 거기에서 직접 작업하고 관리하는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심의 쪽은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와 방통심의위원회가 함께 필요한 기초자료를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보관하는 것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방송정책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위해서만 그 쪽에서 따로 하고, 우리는 외부기관에 위탁해 놓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통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방통위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위원님 컴퓨터에도 설치만 하면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을 방통위가 제출받고, 그다음에 민법상 방송문화진흥회법상에 정해진 외에 민법에 관한 일반적인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제98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왜냐하면 국회 미방위원들이 MBC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KBS와는 조금 다르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가서 하는데 국회 미방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셉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미방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 김재홍 상임위원

-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우리가 못 받아보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어떤 야당 위원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직접 요구해도 정리된 자료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 위원들이 중간역할을 하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직무상 MBC에 어느 정도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MBC에 요구하는 것과 방송문화진흥회에 요구하는 것이 근거가 다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MBC의 경영자료를 방문진을 통해 우리가 입수할 수 있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그렇게 할 근거는 없고, MBC에 필요한 자료는 방송법에 따라 MBC에 직접 요구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98조제2항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재산상황을 MBC가 제출합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MBC가 직접 제출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재산상황 제출 등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제9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게 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업무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특별히 위원회에서 필요한 업무 관련되는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허가를 한다거나 필요할 경우에 법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행정처분을 꼭 전제로 해서만 하느냐, 아니면 이번처럼 상암동에 이전을 했는데 건설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공기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MBC는 반공영이라고 할 만큼 민간방송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또 하나는 그 대신 방통위는 MBC가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직무상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국회보다 더 광범위하게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일반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의 조항은 방송법에 들어온 지는 꽤 됐는데 일반적인 포괄적으로, 가령 말씀하신 상암동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받을 수 없다고 그동안 판단해 왔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이 경영자료인데 나중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방송평가할 때 평가에 필요한 범위 내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 김재홍 상임위원

- 운영의 전반….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방송사의 운영 내지 경영 전반에 관한 자료를 늘 상시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그동안 판단해 왔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니 내용과 편성과 운영을 평가하는데 내용 평가할 때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할 수 있으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하여간 앞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주 마이너(minor)한 질문인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는 내용이 뒤에 자구 수정이 있긴 하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EBS법 시행령이나 미디어법 시행령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제출 관련해서 원 포인트(one point) 개정입니까? 나중에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안건 상정할 때 그것이 아마 별도 안건으로 준비가 되면 최근에 보니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안건을 1건에 여러 가지 법령들을 같이 개정하는 안건도 보이던데, 저는 말씀 드린 2가지 시행령 개정안이 여기에 나온 것만 보면 아주 마이너 한 것 같아서 나중에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안건 상정할 때 그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건을….

○ 이기주 상임위원

- 법령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할 내용이 많은데 나머지 2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보고한 내용상에서는 한 가지씩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마이너해서, 그래서 그 한 가지씩 개정한다는 것을 별도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 최성준 위원장

- 분리를 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시행령별로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요즘 보니까 빨리 아주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안건을 묶어서 하는 경우도 보이던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할 때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하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오늘 저희도 그래서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묶어서 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것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6페이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에 대한 자료 요구 규정 삭제'인데, 지금 이중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비슷한 서류를 내라는 것이 이중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급이 같은 시행령이면 이쪽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시행령은 더 상위이면서 좁은 범위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국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 그것보다 한 급이 낮은 일반규정인데 저희 소관 비영리법인 전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으로 치면 시행령이 더 높고, 범위는 시행령이 더 좁고 그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른 회의에 올라가서 시행령과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규정을 정리하고 시행령을 놔두는 것이 낫지, 어떻게 시행령을 없애고 규정은 놔두느냐, 혹시 그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원래는 규제개혁 회의를 우리 위원회 내 자체적으로 3차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학자들 이야기가 원래는 시행령에 남겨두고 고시를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시가 전 부처 공통으로 다 존재하는 고시라 그것에 따라 처리하고 시행령을 없애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김재홍 위원님도 일정이 있으셔서 나가셨는데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9월 25일 목요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9월 25일이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9월 18일이 있는 주에는 두 분 위원님이 휴가와 출장이 있으셔서 성원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하는데, 일단 9월 25일 목요일로 다음 회의를 정해 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5분 폐회 】